

제183회 영등포구의회
2014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4. 9. 25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5호로 2014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
되어 2014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우리구 소재 각급학교 재학생 중 우수 인재를 발굴, 장학금을
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의
존속기한 만료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
운용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영등포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(안 제2조)

○ 존속기한 : 2018년 12월 31일

나. 위촉위원 임기 연임사항 변경 (안 제6조)

○ 연임기준 : 한 차례만 연임가능

다.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해제를 신설 (안 제6조의2)

라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를 신설 (안 제6조의3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‘부패영향평가지침’을 반영하여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제거·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- 지방기금관리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는 ‘부패영향평가지침’에서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하도록 하였음.
- 이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금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,

위원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 방지와 제척·기피·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검토결과 기금설치와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참고로 장학기금은 관내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09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3억 7,884만원을 조성하였음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